[별지 제14호서식] <개정 2000.12.11, 2002.8.5> (앞 쪽)

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				처리기간	서류검사 7일 현지확인 14일
신청인	①성 명		②주민등록번호		-
	③주 소	(전화 :)			
④검사기관명칭					
⑤소 재 지		(전화 :)			
⑥검사대상축산물 및 검사의 범위					

축산물가공처리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

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

※ 구비서류

1. 검사실 평면도 1부
2.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1부
3.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1부
4.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1부
   가.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
   나. 제품종류별 검사기간
   다.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
   라.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
   마.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
   바.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   사.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

210mm×297mm

(일반용지 60g/㎡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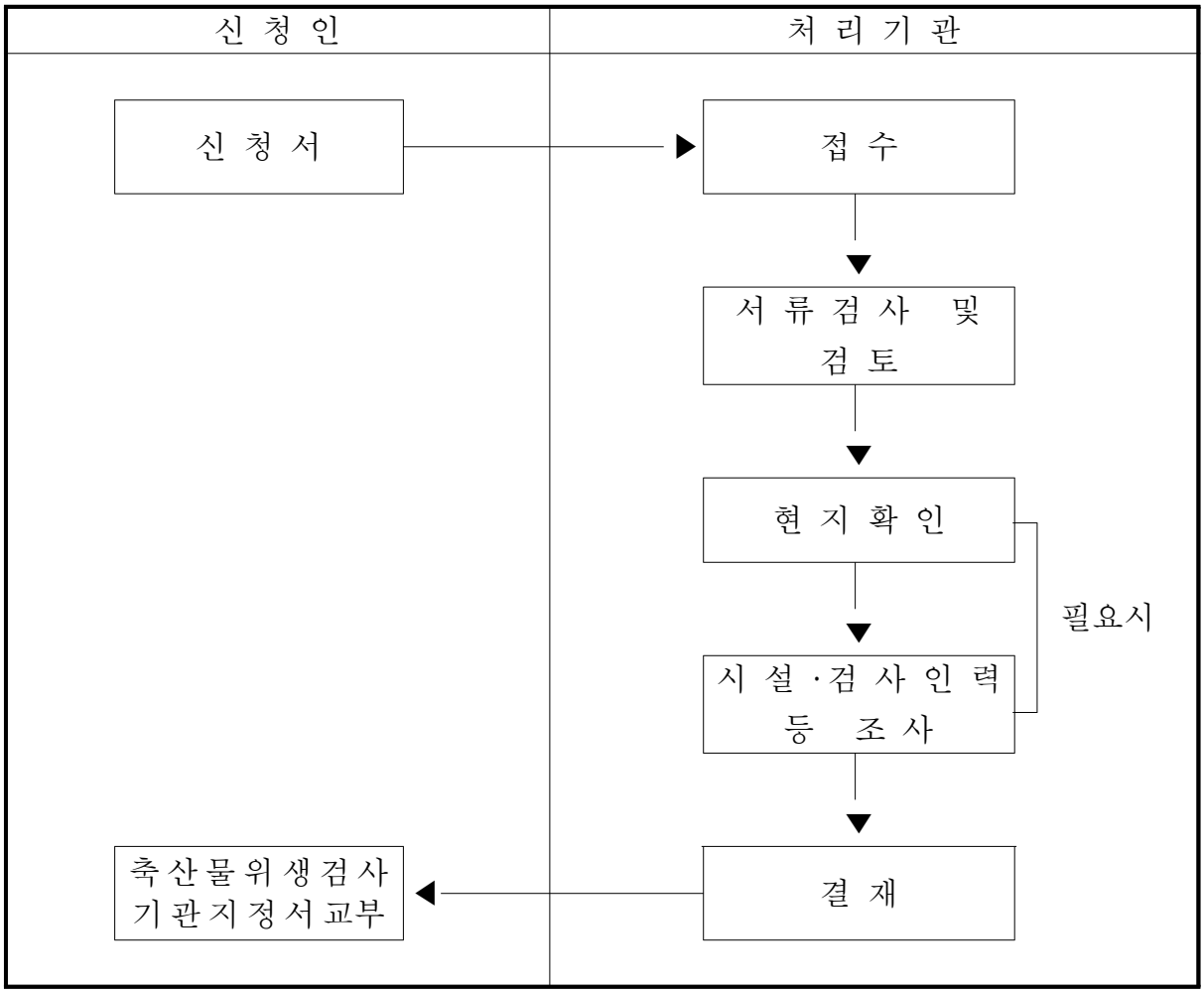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 (뒤 쪽)